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65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1. 1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1. 12. 3. 접수 제146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21. 6. 29.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22. 1.경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2. 4. 11. 기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채무가 합계 11,831,656원에 이르는 사실,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18. 매매(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21.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용인시 처인구 E 공장용지 2,465㎡ 및 위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 12. 17. 주식회사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D은 2021.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용인시 처인구 E 공장용지 2,465㎡ 및 지상 건물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행위 전인 2021. 6. 29.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카드 사용계약이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한 신용카드채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신용카드대금채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2021. 11.경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용인시 처인구 E 공장용지 2,465㎡ 및 위 지상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용인시 처인구 E 공장용지 2,465㎡ 및 위 지상 건물이 모두 2021. 11.경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계약 체결일은 불과 12일 간격으로 연달아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재산처분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법률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는 D의 아들인 점, 이 사건 법률행위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

별지